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 나. 발의자: 우경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상공인을 위해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홍보계획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5조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지역상품 및 업체, 관내 전문건설업체,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창업기업(중소기업) 등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
----------	----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발의자: 우경란, 신흥식, 양송이,  
최봉희, 이규선, 이성수  
의원(6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구매촉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2. 11. 11. ~ 11. 16.):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